#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최인호·이학영·송옥주

김병욱 • 전재수 • 윤관석

박 정・어기구・강준현

김두관 · 서영석 · 양경숙

이수진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자격을 수출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 중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 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 · 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입주자격에 포함함(안 제10조).
- 나.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며,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 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입주제한 업종 외의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업종도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안 제11조).
- 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 9조의2 신설).
- 마.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

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사유로 추가함(안 제40조의2).

바.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자 등을 벌칙 및 과태료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70조까지).

#### 법률 제 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① 관리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관세를 양허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다만, 해당 물품을 전부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 2. 보세사 채용
- 3.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 ③ 관리권자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농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종의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반출 또는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전량 국외 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은 관 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사용·소비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있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87조제4항"을 "제187조제5항"으로, "제6항을"을 "제7항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87조제4항"을 "제187조제5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7조제6항에"를 "제187조제7항에"로 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할 수 없다.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 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 역으로 반출한 경우
-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
- 제5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 제6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자

제6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제70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중 "제37조제1항에"를 "제37조제2항에"로 한다.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	제10조(입주 자격) ①
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	1
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u>자</u> <u>&lt;후단 신설&gt;</u>	<u>자.</u> 이 경우 「수출용 원
	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
	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
	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
	<u>다.</u>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① 관
	리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자유
	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
	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 1.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관세를 양허한 물품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가 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다만, 해당 물품을 전부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어야한다.
-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 2. 보세사 채용
- 3.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제11조(입주계약)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③ 관리권자는 제1항제1호 단 서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계약)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 결할 때에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농림축산 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 가공업종의 경우에는 제10조의2 제2항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 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라 반출 또는 양 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 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 다.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 외하다.
  - 가.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삭 제> 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 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 으로 옮겨 싣는 화물
  - 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 른 수출 신고(이하 "수출 신고"라 한다)가 수리(受 理)된 물품
- 2.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u>정을</u>	준용하(	여 처리	]한다.	
저	]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1 -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 목 | 1. ------.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 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 리된-----

<삭 제>

-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 설>

제34조(역외작업) 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려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 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전 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 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물품은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사용·소비신고 등) 입 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 입된 외국물품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 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 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 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34조(역외작업) ① -----

--. 다만, 제10조의2제1항제1호

- ②·③ (생 략)
- ④ 역외작업의 신고 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8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87조제4항 및 제6항 중 "허가"는 "신고수리"로, "보세공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인"은 "입주기업체"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87조제6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제2항에 따른 신고 수리가 있은 때로 한다.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u><신</u> 저 설>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
작업을 할 수 없다.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187조제5
<u>항</u> <u>제7항을</u>
제187조제5항
<u>স</u> া7 <i>চ্</i> ট
⑤
<u>제187조제7항에</u>
<u>.</u>
베37조(물품의 반출 등) <u>① 제29</u>
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
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
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
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반출신고

를 하여야 한다.

- ① (생략)
-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 1. ~ 4. (생략)
- ③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 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 (현행 제 $1$ 항과 같음)
③제2항에
1. ~ 4. (현행과 같음)
<u>④</u> 제3항에
세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 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 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 다.

1. • 2. (생략) <신 설>

<u><신</u>설>

- 3. ~ 7. (생 략)
- ② ③ (생 략)

제57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 69조·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2. (생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등을 자유
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
용·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
품을 사용한 경우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5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 9 (처체코 가스)

- 1.•2. (현행과 같음)
- 3.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 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0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6. (생략)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7. (생략)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 략) <신 설>

<u>입한</u>	원재토	로 및	원재	료를	제
<u>조·가</u>	공한	물품	등을	자유	-무
역지	역에서	관서	]영역	으로	반
<u>출한</u>	자				
)조(벌	칙)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 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 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 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u>제37조제1항에</u>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자
- 4. (생략)
- ④ (생 략)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③
1.•2. (현행과 같음)
3. <u>제37조제2항에</u>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